

(붙임 1)

「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개정

I 개정 필요성
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개정(2021.2.12일 시행)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, 금융기관들이 배정신청서 작성시 오류가 많은 혁신기업 지원부문의 선정기준 및 서식 항목을 간소화

II 주요 개정 내용

- (벤처기업) 벤처기업 확인기관 관련 기존 근거법(령)* 삭제 및 신설에 따라 변경 사항** 적용

*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8조의3 (삭제),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의3 (신설)

** 벤처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을 기존 기술보증기금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벤처캐피탈협회에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로 변경

- (혁신기업) 업체선정기준 및 관련 별지 서식 항목 간소화

-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별지 제6호 서식*을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, 대출원장에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임이 명기된 경우는 별지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정기준을 간소화

* 금융기관 취급점장이 확인하는 「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확인서」

- 별지 제6호 서식의 항목중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의미가 불분명한 문구를 정비

III 시행일

- 2022.8.1일(금융기관 대출취급일 기준)